

#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tadata Elements to Develop KORMARC Datafield for Archives

박진희(Jin-Hee Park) \*\*

## 초 록

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정보시스템에서 기록물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외에 보존영역(conservation area)과 물리적 기술영역(physical description area)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ISAD(G)2는 26가지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하위요소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물의 특수성을 기술요소에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분석을 통해 선정된 기록물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 및 등급, 공개일자, 공개범위,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기술 요소를 추가하였다.

셋째, 기록물 관리를 위해 512 생산일자 관련주기(creation dates note)와 555 검색보조도구주기(finding aids note), 583 작업현황 주기(action note), 584 추가주기(accumulation note) 데이터필드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245 표제저자 사항(title statement), 300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306 재생/연주시간(playing time), 506 접근제한주기(restriction on access note), 534 원본주기(original version note), 535 원본/사본의 소장처주기(location of originals/duplicates note),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직접적 출처주기(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e), 545 행정연혁/개인이력주기(biographical or historical note), 581 출판주기(publication note), 850 소장처(holding institution)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 추가하였다.

## ABSTRACT

The study intended to develop KORMARC for archives in order to integrate archives with library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2 areas for conservation and physical description are added to the existing 7 areas of ISAD(G)2. The study has also proved that the existing 26 elements of ISAD(G)2 are not fully enough to satisfy the information demands of institutions and its users as well.
- (2) For the use of domestic archives in particular, the study has added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chives that appeared in the Government Regulations of Office Management and those forms of documents that are specified by law for the sake of computerization. The study has added the possible release and grade, release dates, release range, conservation periods, conservation grade, conservation value, the status description of archives elements that are specified in Public Record Management Law.
- (3) The study has developed the following data fields to be added into KORMARC.

512 creation dates note, 555 finding aids note, 583 action note and 584 accumulation note. Also it reorganizes and adds the indicators of the 245 title statement, 300 physical description, 306 playing time, 506 restriction on access note, 534 original version note, 535 location of originals/duplicates note, 540 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e, 545 biographical or historical note, 581 publication note, 850 holding institution data fields.

키워드: 기록물, KORMARC 데이터필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archives, KORMARC datafield, metadata, description elements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uly74@naver.com)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8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8월 25일

## 1.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정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기록물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정보공개법'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기록물 관리와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한편, 다수의 국내 대학기록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기록물 수집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체계화된 기술규칙 및 요소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도서관계에서도 기록물을 도서관 자료와 함께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기록물 관리를 위한 KORMARC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국제 및 국가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이미 제정된 각국의 기술표준을 기록물 국제표준인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e Description)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외국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장서와 기록물이 통합될 수 있도록 MARC AMC(Machine Readable Catalog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ontrol)가 제정되었고, MARC AMC는 이후 USMARC(United States MARC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ontrol)에 통합, 현재는 모든 정보자료를 통합하여 기술하는

MARC21에 통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여타 기록관리기관들은 ISAD(G)를 준용하여 기록물 기술표준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ISAD(G)와 ISAAR(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간에는 연계성이 부족하고 ISAD(G)는 일반적인 기술요소 26개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며 디지털자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준용할 수도 없다. 또한 국제표준은 영어권 국가를 위하여 제정되었기에 그대로 채택하였을 경우, 언어상의 문제와 각국의 고유한 기록관리 관행과 문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미 제정된 기술표준을 ISAD(G)2를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준용하려는 이유는 ISAD(G)2의 서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록물 정보를 검색, 교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고, 기록물의 기술단위의 성격이나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의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표준과 연계하여 사용하거나 국가표준의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물 기술표준 제정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ISAD(G)2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과 도서관 자료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즈와 도서관이 공유시스템을 설계하는 목적은 두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매우 유

사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정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원의 출처에 상관없이 기록물과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은 통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MARC을 이용함으로써 기록물 기술은 도서관자료의 기술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간에는 관리방법이나 생산의도 등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서관 자료를 위한 MARC 데이터필드를 기록물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통합 KORMARC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영미 국가의 통합포맷으로서 MARC21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포맷이 진행되기 이전에 USMARC이나 UKMARC에서는 간행물의 종류에 따른 고유 MARC이 제정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도서자료용·연속간행물용·고서용·단행본용 KORMARC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포맷에 앞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고유 데이터필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별도의 포맷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를 위한 KORMARC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기록물의 속성과 기술원칙을 반영한 기록물용 KOMARC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고유 데이터필드는 누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와 함께 기록물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검색을 위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도출하고, 기술요소에 기반하여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록물 기술요소를 설정하기 위해 국제 및 국외의 기록물 데이터구조와 데이터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사무관리규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서식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비교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ISAD(G) 2 영역을 기본구조로 하여 일반기록물 및 특수형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각 영역별 기술요소를 제시하였다.

셋째, 기록물과 도서관자료와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기술요소와 MARC AMC, 단행본용·비도서용·고서용 KORMARC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KORMARC에 의한 기록물 기술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도서관에서 기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 1. 기록물의 정의 및 유형

기록물이란 뜻을 지닌 영어의 archives는 회랍

어인 archeion에서 유래된 것으로 archives는 기록물 또는 기록보존소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용어집과 학자들이 내린 기록물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면, 기록물은 현행업무에 활용되지 않는 비활동단계의 자료로서 공·사기관이나 개인의 활동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역사적·연구적 보존 가치 때문에 기록보존소에 보존되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기록물의 국제기술표준과 각국의 기록물 기술규칙 용어집에는 일반기록물과 특수형태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특수형태 기록물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상의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고 다만 시청각자료, 오디오자료 등 형태별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각국의 기술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물의 형태별 구분을 살펴보면, 그림, 기호, 소리 등 문자 이외의 형식으로 내용 및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는 화상자료, 건축도면, 지도자료, 동영상, 녹음자료, 전자형태의 레코드, 실물로 구분하고 있다. MAD(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는 지도자료, 건축설계도, 필름·비디오 기록물, 녹음자료, 사진, 전자레코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NARA는 시청각자료와 디지털 객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도 MAD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장기록물의 비중에 따라 양이 많은 자료를 별도로 특수형태 기록물로 구분하여 RAD는 문자기록레코드와 유표레코드를, MAD는 편지와 서신, 권리증서를 특수형태 기록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록물의 형태별 구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

조 2항에 의한 기본목록 및 세부목록에 따르면 기록물의 범주는 크게 일반문서류와 카드류, 대장류, 사진류(사진, 필름, 슬라이드 등) 및 녹음영상물류(오디오, 비디오, 영화 등)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록법시행령 19조에 의거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기록물목록관리프로그램에서는 기록물의 종류를 문서류, 카드류, 도면류, 대장류,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류, 선물류 등 7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물의 형태별 구분을 종합해 볼 때, 일반기록물은 전통적인 문자형태의 기록물이며 특수형태 기록물은 문자형태의 기록물 외의 기타 물리적 형태와 특성을 지닌 대체에 담겨진 기록물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 2. 2 기록물의 가치

학자들에 따라 기록물의 가치를 기능적·증거적·정보적·행정적·역사적·연구적 가치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Shellenberg(2002)와 Schwartz와 Hemon(2002)는 기록의 가치를 두 가지 범주, 일차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일차적 가치는 기록 생산의 근원이 된 업무처리의 목적을 위해 내용적인 면에서 기록이나 영구기록이 가지는 지속적인 유용성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차적 가치는 기록 생산의 근원이 되는 업무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기록이나 영구기록이 가지는 영구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Snellenberg는 일차적인 가치를 기능적 가치와 재정적 가치, 법적 가치로, 이차적인 가치를 정보적 가치와 고유가치

로 세분하고 있다. Candy Schwartz와 Peter Heron은 일차적 가치를 행정적·법적·재정적·연구 또는 과학적 가치로, 이차적 가치를 증거적이며 정보적인 가치로 세분하고 있다.

## 2. 3 기록물 기술의 특성 및 원칙

### 2.3.1 도서관 서지기술과의 차이

도서관의 서지기술과 기록물의 기술과의 차이점은 기록물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기록물은 정부기관이나 기타 조직의 기능적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생산되며 집적된다. 기록물 기술은 이러한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공통된 원전을 지니고 있는 때로는 하나 이상의 형태나 매체로 된 폰드(fond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록물의 복잡한 체계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물 기술은 전체를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 다음에는 전체의 하위요소를 식별, 기술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하위요소의 하위요소 등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도서관의 서지기술은 항상 개별적인 단

위기록 그 자체와 관련된다. 개별적인 단위기록은 저자와 책제목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도서나 정기간행물, 신문, 연차목록, 회보와 같은 연속간행물이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목록 작성시 단일한 실체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있어 기술적인 목록작성은 개별적이고 독립된 단위기록과 관련이 있다. 도서관 자료의 서지기술은 단일 출판물을 중심으로 출판된 아이টে임을 나타내며 또한 아이টে임을 계층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술과 피기술대상물간에는 일대일 관계가 있으며 기술은 물리적인 아이টে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지기술은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록물 기술은 자료의 지적 구조와 내용을 강조한다.

기록물의 서지정보는 기록물 자체의 내적정보 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이나 기타 기록물과의 전후관계 등과 같은 외적 증거정보도 함께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물의 서지정보는 자료의 기원에 관한 총체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 기록물 기술과 도서관 서지기술의 차이점

구 분	기록물 기술	도서관 서지기술
기술단위	집합체	개별단위, 독립단위
기술과 아이টে임과의 관계	복잡	일대일 관계
강조점	자료의 지적구조와 내용	물리적 특성
기술출처	내적정보 및 외적정보	내적정보
서지길이	평균 15~30페이지	1~3장의 카드
기술요소	문서명, 출처, 기능, 생산년도, 주제사항, 생산기관, 유형, 수량, 크기, 생산기관의 연혁, 기능 및 활동, 수집, 평가, 처분내용	서명, 저자, 판차, 출판사, 출판지, 출판년, 페이지, 크기, 주기표시

반면에 도서관 자료의 서지정보는 주로 도서의 일정한 형식에 따라 표현된 내적인 증거정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서지기술을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카드에 기술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록물 기술은 기술단위가 단일 아이템일지라도 기록물에 따라 천 페이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상세한 기록물 기술은 평균적으로 그 길이가 15-30 페이지에 달할 수도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 2.3.2 기록물의 기술원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의 서지기술은 단일출판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록물 기술은 폰드라는 집합체를 중심으로 한다. 폰드는 원전이나 제작의 역사 및 자료의 소장에 의해 연결되며 기록물의 속성인 법적·역사적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생성된 맥락을 기록하고, 그 내부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곧 기록물 기술의 폰드 존중(respect des fonds)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원전 및 원본순서의 원칙이 포함된다.

첫째, 원전의 원칙(principle of provenance)은 기원이 동일한 자료들은 함께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자료들과 섞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동일 원전의 자료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함께 보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의 출처가 기술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 기술은 원전별 검색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기술 시스템은 단일보존소가 소장한 단일 생산자의 모든 기록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원본순서의 원칙(principle of original order)은 생산자가 부여한 기록물의 순서를 물리적·지적 수단을 통해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계층관리(control of levels)의 원칙은 원전과 원본순서를 존중하면서 기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Oliver Wendell Holmes(1964)는 다계층 원칙의 본질은 가장 포괄적인 상위계층에서부터 가장 구체적인 하위계층의 연속선을 따라 기록물 세트를 구분하여 기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집합기술(collective description)의 원칙은 기록물 세트를 분리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기술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 2.4 기록물의 기술요소

본 장에서는 기록물 데이터구조 요소 및 데이터기술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물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기술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 2.4.1 기록물 데이터구조 요소

#### 2.4.1.1 MARC AMC(Machine Readable Cataloging - Archives and Manuscripts Control)

미국의회도서관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기에 여러 종류의 자료에 대한 개개 MARC 포맷을 개발했다. 1973년 필사본을 위한 MARC Format for Manuscripts를 개발하였으나 아이템 계층에 대한 제한된 기술범위가 기록물의 개

념과 아카이브즈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NISTF(National Information Systems Task Force)는 기록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포맷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고,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사한 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은 이미 현존하는 포맷인 MARC format for Manuscripts, 즉 USMARC 포맷을 기록물의 요구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1983년 초 AMC 포맷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포맷이 SAA 협의회, 미국의회도서관 및 미국도서관협회(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MARBI(Machine Readable Bibliographic Information)의 RTSD(Resource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LITA(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RASD(Reference and Adult Services Division)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포맷의 최종판은 MFBD(MARC Formats for Bibliographic Data), Update No. 10의 일부로서 1985년 초 배포되었다. 그 후 1987년 Lisa Weber에 의해 MARC AMC, update 2가 발행된 후 거의 개정 없이 USMARC 서지포맷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999년에는 USMARC과 CANMARC이 통합된 MARC 21은 기록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기술하는 포맷으로 제정되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MARC AMC의 기본구조는 리더, 디렉토리, 제어필드, 가변길이 데이터 필드로 구성된다. MARC AMC 포맷에는 77개의 가변길이 데이터필드가 포함되어 있다.

#### 2.4.1.2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EAD는 전 세계의 기록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을 명시하고, 계층성을 보존하는 데이터 구조 표준이다. MARC는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정보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없고, 기록물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며 기록물과 연관된 다양한 디지털 객체로의 연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EAD가 개발되었다.

EAD DTD는 ISAD(G)를 반영하여 기록물 기술의 계층적 속성과 기술의 상속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기술요소는 컬렉션이나 фонд 전체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체에 대한 기술 이후에도 동일한 요소가 전체의 구성부분을 기술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기술계층에서는 전 계층에 적용되는 기술만을 제시한다. 각각의 낮은 계층은 상위계층의 기술을 상속받는다.

EAD는 TEI(Text Encoding Initiative)에 기반하여 구성된 것으로 eadheader, frontmatter, archdesc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146개의 태그로 이루어져 있다.

#### 2.4.2 기록물 데이터기술 요소

##### 2.4.2.1 ISAD(G)2(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es Description 2nd edition)

ICA는 국제적 차원의 기록물 기술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표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첫 번째 우선사항으로 1966년 이후 국제도서관연맹에 지침으로 제공되었던 파리 원칙의 목적과 유사한 기본적인 이론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 ICA의 기록물 기술에 관한 원칙성명은 1990년과 1991년

동안 광범위하게 배포되었고, 1992년 ICA 몬트리올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표준특별위원회는 원칙을 제정할 때 국제도서관협회의 ISBD(G)를 모방하여 기술표준 ISAD(G)도 작성했다. ISAD(G)는 미국의 APPM, 캐나다의 RAD, 영국의 MAD와 같은 주요 표준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표준에서 일치하는 기술요소를 표준으로 채택했다. ISAD(G)는 1994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출판되었으며, 2000년 제 2판이 개정되었다.

이 표준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규칙의 성격을 지닌다. 즉, 기술단위의 성격이나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의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ISAD(G)2(2000)는 기록물을 기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7개영역으로 나누어 26개의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 2.4.2.2 APPM2(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2nd edition)

APPM2(1989)는 미국의 기록물기술을 위한 국가표준으로 문자 중심의 텍스트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기술표준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기타 기관에서 자관 소장물 자료를 기록물 지향적으로 편목할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기록물 기술표준화는 도서관과 정보과학계 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도서관과 서지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AACR2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기록물 기술표준을 개발하였다.

APPM2(1989)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AACR2의 영역구분을 그대로 채용하여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영역은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 판 영역, 형태기술영역, 주기영역으로 나뉜다.

#### 2.4.2.3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의 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의 목적은 NARA에서 라이프사이클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요소를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편람은 기록물의 전 라이프사이클이 아니라 영구기록물 기술의 부분에 대한 데이터 요구안을 다루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각 지역, Washington D.C의 기록보존소, 대통령 도서관들의 영구기록물 기술에 적용된다. APPM2와 비교해 볼 때, APPM2는 주로 도서관에 부속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서 사용하는 기술표준이고, 연방정부 및 대통령 기록과 같은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들에서는 NARA 편람을 사용한다.

이 편람의 요소들은 레코드 그룹에서부터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계층의 모든 기록물과 종이에서부터 전자레코드, 인공물 등 모든 포맷을 기술하는데 적용된다. 그리고 다계층 기술의 원칙에 따라 생산자의 기술을 여러 가지 다른 기록물 기술과 연결할 수 있다.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물 기술 요소는 세 가지 범주 즉, 지적 요소군과 물리적 요소군, 매체 요소군으로 나뉜다.

NARA 편람은 다른 국가의 기록물 데이터 기술 요소와 달리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내에서 종이 기록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매체 기록물의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2.4.2.4 DACS(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SAA는 2001년 국제인문기부금을 받아서 CUSTARD(Canadian-U.S. Task Force on Archival Description)라는 미국-캐나다 공동 기술표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APPM과 RAD를 대체할 수 있고, ISAD(G)와 ISAAR(CPF)의 모든 기술요소와 일치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표준을 산출했다.

1996년 EAD가 개시되었을 당시, APPM의 개정시 목록 레코드에 대한 규칙 뿐만 아니라 검색보조도구에 대한 규칙도 통합시키고, 두개의 국제표준인 ISAD(G), ISAAR(CPF)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공동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캐나다는 CUSTARD 초안을 RAD의 개정판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하기로 하고, 미국 아키비스트들은 그 초안에서 DACS(Describing Archives : A Content Standard)를 추출했다.

APPM과 같이 DACS는 부분적으로 기타 목록코드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AACR2 4장의 규칙을 대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미국의 DACS는 목록레코드와 완전한 검색보조도구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이나 모든 계층의 기록물 자료와 필사본 자료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DACS는 ISAD(G)2의 26개 요소와 ISAAR(CPF)의 요소를 실제로 일부 경우에서 그대로 통합하여 ISAD(G)2의 식별영역의 기술계층을 독립된 기술요소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ISAD(G)의 영역별 요소와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 2.4.2.5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캐나다는 주요 국가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광범위한 협력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표준을 진행시켜왔다. 먼저 1970년대 후반에 착수되었던 캐나다 기록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에서 기술 표준의 부재가 국가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아키비스트 사무국(Bureau of Canadian Archivists)은 1985년 Toward Descriptive Standards를 출판했다. BCA는 분과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기술표준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캐나다에서의 기술표준개발을 계획하고 통합 조정했다.

RAD는 크게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RAD는 3장에서 12장까지 텍스트레코드, 화상자료, 지도자료, 건축도 및 기술도, 동영상, 녹음자료, 전자자료, 마이크로폼 레코드, 실물, 우표자료 등 각 특수형태별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2.4.2.6 MAD3(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 3rd edition)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영국의 노력은 영국 아키비스트협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Cook의 주도하에 진행된 리버풀 대학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보고서가 1986년 MAD로 출간되어 현재 3판(2000)에 이르고 있다.

초판에서는 특수매체를 포함하지 않다가 2판(1989)에서부터 특수매체에 대한 고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3판(2000)에서는 ISAD(G)의 원칙과 용어를 수용하고 있다. MAD3(2000) 역시 기록물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

의 기술계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계층 기술을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MAD3는 다른 기술표준과 달리 기록물 기술부문과 관리정보부문으로 나누어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89개의 기술요소는 7개 영역, 2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MAD3는 5부 특수매체에서 권리증서, 편지와 서신, 사진, 지리기록, 건축기록, 소리기록, 필름과 비디오, 전자자료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2.5 우리나라 기록물의 기술요소

우리나라 기록물의 형태별 구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별 기록물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은 일반문서류라 할 수 있다. 일반문서류는 공문서로서 사무관리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한다. 공문서는 기타 유형의 기록물과는 달리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표준형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표준서식을 통해 우리나라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종이 공문서 서식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자문서 서식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은 행정기관명, 수신자 등의 두문부와 제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본문부, 그리고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협조자의 직위 또는 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와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을 쓰도록 하는 결문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전자공문서의 서식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생산등록번호, 수신자, 참조할 부서, 수신자의 주소, 제목, 본문, 첨부서류의 표시, 시행일자,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협조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물은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생산된 의도와 생산배경 등이 중요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배경이나 타 기록물과의 전후관계 등을 파악하여 기술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항목들에 기록된 내용은 기록물의 생산배경과 기록물 자체의 고유정보 등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법령에서 명시된 항목들의 내용은 기록물 기술과정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식의 요소를 기록물 기술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해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영역의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여 기록물 기술요소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서식요소를 ISAD(G)2의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공문서 기술요소

영역 \ 요소	ISAD(G)2 기술요소	서식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표제	제목
	일자	시행일자, 접수일자
배경영역	생산자명	행정기관명, 수신자, 참조부서,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행정연혁/개인이력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본문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열람조건	공개
연관자료영역	관련기술단위	첨부자료

## 2. 6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기록물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내의 기록관리기관은 ISAD(G)2를 준용하여 기록물 기술표준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과 일본에서도 ISAD(G)를 준용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ISAD(G)는 ISAAR(CPF)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기술요소 26개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며 디지털 자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준용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국제표준은 영어권 국가를 위하여 제정되었기에 그대로 채택하였을 경우, 언어상의 문제와 각국의 고유한 기록관리 관행과 문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ISAD(G)2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의 기술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기록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 지도기록물, 건축기록물 등 특수형태 기록

물의 기술요소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이미 제정된 기술표준을 ISAD(G)2를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준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ISAD(G)2는 정보공유를 위한 핵심수준의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수준의 기술요소는 이용자가 적합문헌을 찾고, 식별하고, 선택하여 획득하는데 필요한 영역과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ISAD(G)2 서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ISAD(G)2는 국가표준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제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또는 연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교환과 검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준용하되 ISAD(G)2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문제점이 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요소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

각국의 기록물 데이터기술 요소의 경우 RAD와 MAD3만이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외에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기록물 기술영역과 요소가

상이며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통합된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가 필요하다.

기록물 데이터구조 요소의 경우, EAD 제정이 후 MARC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간행물과 기록물의 통합을 위해 EAD와 MARC 레코드 모두를 생산해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EAD에서 MARC 레코드를 생성하기가 어렵고, 이름 전거작업과 주제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EAD에서 생산된 레코드는 불완전하고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이용자들은 정보원의 1차적인 접근점으로서 OPAC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MARC의 사용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사무관리규정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종이 공문서와 전자문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서식요소들은 기록물 공문서의 생산배경이나 타 기록물과의 전후관계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를 위해 기록물 기술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기록물 데이터기술 요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 3. 기록물 기술요소의 선정

본 장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앞 장에서 살펴본 국제 및 국외의 기록물 데이터기술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기록물 국제기술표준인

ISAD(G)2와 캐나다의 RAD, 영국의 MAD3, 미국의 APPM2와 NARA편람, DACS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APPM2가 국가기술 표준이나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NARA편람이 사용되고 있고, APPM2의 개정안으로서 ISAD(G)2의 체계에 맞추어 DACS가 발행되었기에 세 개의 표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기록물 및 특수형태 기록물의 기술영역과 요소를 ISAD(G)2 영역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SAD(G)2 영역을 기본구조로 채택한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ISAD(G)2를 준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한국 기록물 기술표준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제정된 각국의 기술규칙도 ISAD(G)2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물 기술영역 및 요소 선정시 서지정보의 교환을 위한 핵심요소로 구성된 ISAD(G)2의 영역과 요소를 기본구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 외에 우리나라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 3.1 일반기록물 기술영역

주요 일반기록물 기술영역별 빈도수를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일반기록물 기술영역별 빈도수

영역	빈도수	해당 기술표준
식별영역	5	A, N, D, M, R
배경영역	5	A, N, D, M, R
내용과 구조영역	5	A, N, D, M, R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5	A, N, D, M, R
연관자료영역	5	A, N, D, M, R
주기영역	5	A, N, D, M, R,
기술통제영역	3	M, N, D,
판영역	2	R, A
출판사의 총서영역	1	R
표준번호영역	1	R
보존영역	1	M

※ APPM2 = A, NARA = N, DACS = D, MAD3 = M, RAD = R

ISAD(G)2에서는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 5개 비교대상 기술영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역은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등이다. 기술통제영역만 공통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제영역은 RAD와 APPM2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영역은 기록물의 기술담당자와 기술방법을 제시하는 영역으로서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RAD와 APPM2의 경우, 도서관 목록규칙인 AACR2의 골격을 토대로 도서관계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기술규칙이 제정되었고, MARC을 준용하여 기술정보 공유를 추진했기 때문에 또한 이들 영역은 MARC환경에서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ISAD(G)2 이

전에 개발된 국가표준들은 ISAD(G)2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추진한 CUSTARD 프로젝트 결과물에서는 ISAD(G)2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비록 두 나라가 공동표준을 개발하지 못했지만, APPM2를 대체가능한 DACS에서도 APPM2에 없었던 기술통제영역을 추가하고 있고, RAD도 이 프로젝트 초안을 중심으로 RAD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통제영역이 공통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술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외에 각국의 기술영역으로 나타난 영역으로는 APPM2와 RAD의 판영역, RAD의 출판사의 총서영역, 표준번호영역, MAD3의 보존영역이다. APPM2와 RAD의 이러한 영역들은 기록물의 유일성 특성에 따라 기록물 자체보다는 단행본, 총서, 간행물 등 도서관 자료의 특성부분으로서 이들 규칙이 도서관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출판사의 총서영역과 표준번호영역은 기록물과 다른 특성을 지닌 간행물을 관리하기 위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

한편 MAD3의 보존영역은 관리정보부문에 나타나는 영역으로 MAD3는 기록물 기술의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록물 기술부와 관리정보 부문으로 나누어 그 관리정보부문에서 보존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보존영역은 기록물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이며 ISAD(G)2를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각국의 기록물은 비현용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관리·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ISAD(G)2 영역에서는 제외되었더라도 보존영역은 추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AD(G)2의 7개 영역에 MAD3의 보존영역을 추가하여 8개 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 3. 2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영역

특수형태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영역 및 요소 외에도 다른 영역과 요소들이 필요하다.

기술영역별 특수형태 기록물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영역별 특수형태 기록물 빈도수

영역	빈도수	해당 기술표준
식별영역	3	R, M, N
배경영역	3	R, M, N
내용과 구조영역	3	R, M, N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3	R, M, N
연관자료영역	3	R, M, N
주기영역	2	R, N
기술통제영역	2	M, N
판영역	1	R
출판사의 총서영역	1	R
표준번호영역	1	R
보존영역	1	M
관리정보영역	1	M

※ RAD = R, MAD3 = M, NARA = N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역은 식별영역, 배경영역,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 등이다. 공통적이지 않은 영역으로는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외에 각국의 기술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판영역, 출판사의 총서영역, 표준번호영역, 보존영역, 관리정보영역이다.

일반기록물 기술요소와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의 물리적 기술요소에서 기록물 형태별로 상세한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형태 기록물의 기술 특성상 상세한 기술요소가 요구되며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록물 기술영역 설정과 동일한 이유로 특수형태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ISAD(G)2의 7개 영역 외에 보존영역, 물리적 기술영역을 추가하여 9개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3. 3 기록물 기술요소 선정

앞 절에서 설정한 영역별 기술요소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각 영역에 속하는 일반기록물 기술요소의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빈도수가 3 이상인 기술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반기록물 기술요소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 우리나라 공문서 서식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술요소와 각국의 기록물 기술요소로 사용되지 않은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보존관련 요소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추출한 기술요소로서 기록물은 그 중요도에 따라 보존연한이 책정되고, 그 보존연한이 경과되면 다른 보존소로의 이관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보존기간이 책정된 이후 보존방

〈표 5〉 영역별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빈도수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빈도수	해당표준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빈도수	해당표준
참조코드	4	I, D, R, M	다른 폰드내에서의 관련레코드 그룹	1	R
표제	6	I, A, N, D, R, M	주기	5	I, A, N, R, M
일자	6	I, A, N, D, R, M	번호주기	1	N
기술계층	4	I, N, D, M	척도주기	1	N
기술단위의 수량과 매체	6	I, A, N, D, R, M	범위 및 내용주기	1	N
보존소명 및 보존소위치	1	D	이형표제주기	1	R
생산자명	6	I, A, N, D, R, M	본표제 정보원주기	1	R
행정연혁/개인이력	5	I, A, D, R, M	대등표제, 기타 표제정보주기	1	R
기록물 이력	6	I, A, N, D, R, M	표제개제주기	1	R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5	I, A, D, R, M	책임사항주기	1	R
범위와 내용	6	I, A, N, D, R, M	기여와 추론주기	1	R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3	I, D, M	판주기	1	R
추가	4	I, D, R, M	물리적 기술주기	1	R
정리체계	6	I, A, N, D, R, M	출판사의 총서주기	1	R
열람조건	6	I, A, N, D, R, M	알파벳-숫자표시주기	2	D, R
복제조건	5	I, A, D, R, M	아키비스트주기	3	I, N, D
언어와 스크립트	6	I, A, N, D, R, M	규칙과 협약	2	I, D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6	I, A, N, D, R, M	기술일자	4	I, N, D
검색보조도구	6	I, A, N, D, R, M	장소레코드	1	M
원본의 존재와 위치	4	I, A, D, R	정리레코드	1	M
사본의 존재와 위치	6	I, A, N, D, R, M	색인레코드	1	M
관련기술단위	5	I, A, D, R, M	이용레코드용 발행	1	M
출판주기	4	I, A, D, M	문의레코드	1	M
인용	2	A, D	행정	1	M
기록물 기술에 대한 인용	1	A	보존레코드	2	D, M
전시레코드	1	M			

※ ISAD(G)2 = I, APPM2 = A, NARA = N, DACS = D, RAD3 = R, MAD3 = M

법과 장소가 결정되고, 보존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열람제한 상태가 결정된다. 따라서 ISAD(G) 2에서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가 기록물의 해석이나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이들 요소는

이에 해당하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ISAD(G)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ISAAR(CPF)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록물의 생산자명은 기관의 경우에 신설, 합병, 폐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개인의 경우

도 본명 뿐만 아니라 가명, 직함, 작위 등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산자명의 다양성 때문에 색인을 만들고,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A는 기록물의 접근향상을 위해 전자 표준을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접근점의 선정, 검색 및 색인작성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생산자명과 행정연혁/개인이력 요소는 전자파일과 연계하여 전자레코드에 기술하거나 ISAAR(CPF)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ISAAR(CPF)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생산자명과 행정연혁/개인이력의 하위요소로서 제시하였다.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선정 방법과 동일하게 앞 장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각 영역에 속하는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의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빈도

수가 2 이상인 기술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로 설정하였다.

빈도수가 2 미만인 기술요소 가운데 행정연혁/개인이력, 평가·폐기·처리일정 정보는 ISAD(G)2가 핵심수준의 기술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기술요소이다. 행정연혁/개인이력은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을 나타내는 기술요소로서 배경 안에서 해당 자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위하여 필요하므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평가·폐기·처리일정 정보와 보존 기술요소는 향후 기록물의 해석이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폐기·처리일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고, 이후 보존방법과 장소가 결정되며 보존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열람 제한 상태가 결정되므로 이들 기술요소는 빈도수가 일정 수준 미만일지라도 포함시켜야 한다.

<표 6> 영역별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 빈도수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	빈도수	해당표준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	빈도수	해당표준
참조코드	3	I, M, R	복제조건	3	I, M, R
표제	4	I, M, R, N	언어와 스크립트	3	I, M, R, N
일자	4	I, M, R, N	검색보조도구	3	I, R
기술계층	3	I, M, N	원본의 존재와 위치	2	I, R
기술단위의 수량과 매체	4	I, M, R, N	사본의 존재와 위치	3	I, R, N
생산자명	4	I, M, R, N	관련기술단위	2	I, R
행정연혁/개인이력	1	I	출판주기	1	I
기록물 이력	3	I, R, N	주기	3	I, M, R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2	I, R	아키비스트주기	2	I, N
범위와 내용	4	I, M, R, N	규칙과 협약	1	I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1	I	기술일자	2	I, N
추가	1	I	보존	1	M
정리체계	4	I, M, R, N	물리적 기술	4	I, M, R, N
열람조건	4	I, M, R, N			

※ ISAD(G)2 = I, MAD3 = M, RAD = R, NARA = N



이 외에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가치 기술요소를 일반기록물 기술요소와 동일한 이유로 추가하였으며 열람조건에 공개여부 구분표시와 공개제한 단위를 추가하였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에서는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와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표시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여부에 따라 열람제한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추가하였다.

하위기술요소로는 ISAAR(CPF)와의 연계성을 위해 일반기록물 기술요소와 동일한 이유로 추가하였으며, 물리적 기술영역의 기술요소는 모든 비교 대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추출하여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록물 및 특수형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를 설정하였다.

#### 4.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정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선정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기반으로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기록물 기술규칙이 개발된 국가의 경우 도서관과 기술정보를 공유화하기 위한 표준포맷으로서 MARC AMC가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록물용 표준 기술요소 및 기술포맷이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KORMARC의 서지포맷을 기초로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KORMARC AMC를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장에서

는 기록물 기술요소와 MARC AMC, KORMARC의 단행본용·비도서자료용·고서용의 데이터필드를 비교분석하여 KORMARC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KORMARC 데이터필드의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 4. 1 기록물 기술요소와 MARC 데이터필드 비교분석

기록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필드를 설정하기 위해 3장에서 선정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MARC AMC 데이터필드와 단행본용, 고서용 및 비도서자료용 KORMARC 데이터필드를 <표 7>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 7>에서 비교한 MARC 데이터필드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KORMARC에서 기록물 자료 목록시의 문제점과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일자, 축적일자, 배포일, 저작일, 저작권일자, 주제시기, 보관일자, 시행일자, 접수일자와 같은 다양한 일자 요소들은 기록물의 증거적 특성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KORMARC에서는 발행일자, 인쇄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들을 기술해 줄 수 있는 데이터필드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 보존연한이 책정되고 그 보존연한이 경과되면 다른 보존소로의 이관이 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보존기간이 책정된 이후 보존방법과 장소가 결정되고, 보존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열람제한 상태가 결정된다. 따라서 보존과 관련된 요소들을 기술할 수 있는

〈표 7〉 기술요소, MARC AMC, KORMARC 데이터필드 비교

영역 요소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	MARC AMC	단행본용 KORMARC	고서용 KORMARC	비도서용 KORMARC
식별영역	참조코드	참조코드		850 \$a	850 \$a	850 \$a
	표제	표제	245	245	245	245
	일자	일자	245, 260	260		260
	기술계층	기술계층	351 \$c			351 \$c
	기록단위 수량과 매체	기록단위 수량과 매체	300	300	300	300
배경영역	생산자명	생산자명	100, 110	100, 110	100, 110	100, 110
	기여자	기여자				
	기증자	기증자				
	기안자	프로젝트후원자/관 리자				
	검토자	프로듀서				
	협조자	책임자				
	결재권자					
배경영역	수신자					
	행정연혁/개인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	545		545	
	보관이력	보관이력	561		561	561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541		541	
내용과 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초록	범위와 내용, 초록	520	520	520	520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583			
	추가	추가	584			
	정리체계	정리체계	351			351
열람과 이용 조건 영역	열람조건	열람조건	506	506	505	506
	복제조건	복제조건	540	540	540	540
	언어 및 스크립트	언어 및 스크립트	546		545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340			340
연관자료 영역	검색보조도구	검색보조도구	555			
	원본의 존재와 위치	원본의 존재와 위치	535	534	534	534
	사본의 존재와 위치	사본의 존재와 위치	535	533	535	535
	관련기술단위	관련기술단위	544		544	
주기영역	출판주기		581		581	581
	주기	주기	500	500	500	500
기술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아키비스트 주기	500	500	500	500
	기술일자	기술일자	583			
보존영역	보존	보존	583			
		기술적 요구사항	340			340
물리적 특성영역		녹음 및 녹화상태·재 생에 관한 사항	306			
		크기에 관한 사항	300	300	300	
		매체의 재질과 형태에 관한 사항	340			340

데이터필드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식별기호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술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KORMARC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먼저 245 표제저자사항 데이터필드에서는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보충표제를 기술해 줄 수 있도록 기타표제 식별기호를 추가해야 하며 시간적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술하기 위해 저작일자와 임의일자 식별기호를 추가해야 한다. 300 물리적 기술 데이터필드는 도서관 서지적 특성을 반영한 식별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록물에 맞게 수량, 기타 물리적 특성, 언어 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306 재생/연주시간 데이터필드는 재생시간 외의 녹음 및 녹화상태, 재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06 접근제한주기 데이터필드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범위, 공개여부, 등급, 사유와 같은 기술요소를 기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34 원본주기 데이터필드는 원본판사항, 출판사항, 원본형태사항 등 표제 및 형태사항과 같은 단행본 정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의 존재여부나 위치를 기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35 원본/복제본의 소장처주기 데이터필드는 현재 입력하고자 하는 자료의 원본이나 복제본이 타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과 사본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보존을 목적으로 사본을 열람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타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본의 존재와 소장처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대한 주기 데이터필드에서는 제한의 범주에 저작권, 매매 등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록물의 복제에는 저작권의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선정된 기술요소에도 저작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필드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며 식별기호를 재구성해야 한다. 541 입수처 주기 데이터필드에서 해당자료의 직접입수와 관련된 출처 외의 수집방법과 관련일자를 기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44 동일자료의 위치주기 데이터필드에 출처 외에 다른 연계성에 의한 기록물 관계의 특징을 기술해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45 전기적 주기 또는 역사적 주기 데이터필드에서 ISAAR(CPF)의 정보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581 참조정보원 주기 데이터필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출판주기를 기술할 수 있도록 출판주기 필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850 소장처 데이터필드에 참조코드 요소를 기술하고, 하나의 기술단위를 특별하게 구분하여 이를 표현하는 기술과 연결시키기 위한 참조코드의 목적을 위해 재구성해야 한다.

셋째, MARC AMC 데이터필드를 활용할 수 있는 필드는 555 검색보조도구주기, 583 작업현황주기, 584 추가주기 데이터필드 등이다. 기록물에 대한 통제정보와 정보검색을 위해 작성된 검색보조도구를 기술하기 위해 555 검색보조도구 데이터필드를 설정해야 하며 평가, 폐기, 보존행위와 같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583 작업현황주기 데이터필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추가 관련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584 추가주기

데이터필드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KORMARC 데이터필드를 활용 할 수 있는 필드는 100 개인명-기본표목, 110 단 체명-기본표목, 340 물리적 매체, 351 자료의 구조와 배열, 500 일반주기, 520 요약주기, 546 언어주기, 561 자료내력에 관한 주기 데이터필드 등이다.

#### 4. 2 기록물 관리를 위한 MARC 메타데이터요소 설정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 외에 6XX 필드와 7XX 필드를 추가하여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요소를 설정하였다. 6XX 필드와 7XX 필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필드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 내용의 속성상 기록물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각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데이터필드는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보충표제를 기술해 줄 수 있도록 기타표제 식별기호를 추가하였으며 시간적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술하기 위해 저작일자와 임의일자 식별기호를 추가하였다. 생산자명 외에 기록물의 생산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생산역할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생산자는 \$d 첫 번째 저자에서, 그 외의 생산역할자는 \$d 두 번째 저자에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가하거나 재구성한 식별기호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4.2.1 245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Title Statement) [반복불가, 필수]

알려진 기록물명을 기술한다. 기록물을 생산, 축적, 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니고 있는 개인명은 \$d 두 번째 저자에서 기술한다.

\$a 표제

\$b 기타표제

\$c 부표제

\$d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 이하 생산자 ; 역할이 다른 생산자

\$e 기타표제

\$f 저작일자

\$g 임의일자

\$x 대등표제

\$y 출판시리즈 표제

300 형태사항 데이터필드는 도서관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반영한 식별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트랙수, 피트수, 트랙형태/언어/위치, 테이프 두께 등 크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줄 수 있도록 기록물에 식별기호를 재구성하였다.

#### 4.2.2 300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300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반복, 필수]

해당자료의 수량과 특정자료표시, 물리적 특성, 크기와 딸림자료 등을 기술한다.

\$a 수량(트랙수, 피트수 등)

\$b 기타 물리적 특성(음향, 색채, 재료, 대지, 화면비, 영사특성, 필름속도 등)

\$c 크기

\$e 딸림자료

\$l 언어

306 재생연주시간 데이터필드는 녹음자료와 시청각자료의 재생시간 외에 녹음 및 녹화상태, 재생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추가하였다.

4.2.3 306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306 재생/연주시간(Playing Time) [반복불가, 재량]

녹음자료나 시청각자료의 재생시간이나 악보의 연주시간을 hhmmss(2자리-시간, 2자리-분, 2자리-초) 방식으로 기술한다. 재생 또는 연주시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 \$a 재생/연주시간, 재생상태, 재생속도
- \$b 녹음기법
- \$c 소리특성 및 음구특성
- \$d 모드 또는 과정

506 접근제한주기 데이터필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범위, 공개여부, 등급과 같은 기술요소를 기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식별기호를 추가하였다.

4.2.4 506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06 접근제한주기(Restrictions on access note) [반복, 재량]

기록물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 \$a 공개여부 및 공개등급
- \$b 공개일자 및 제한일자
- \$c 공개범위

\$d 사용자 제한주기

512 일자주기 데이터필드는 생산일자, 축적일자, 배포일, 저작일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일자요소들을 기술하기 위해 새롭게 설정하였다.

4.2.5 512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12 일자주기(Date/Time Note) [반복, 재량]

기록물의 생산, 유지, 관리와 관련된 일자를 기술한다.

\$a 일자주기

534 원본주기 데이터필드는 원본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원본에 대한 주요관리번호와 그 소재, 이용가능성 여부나 파기에 관한 사항, 원본과 연관성을 지닌 자료 참고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4.2.6 534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34 원본주기(Original Version Note) [반복, 해당시 필수]

해당자료가 영인, 복사, 마이크로형태 등에 의한 복제물이고, 복제본을 중심으로 서지정보를 기술한 경우, 그 원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a 소장처
- \$b 관리번호
- \$c 이용가능성 여부 및 이용가능한 기타형태
- \$d 파기에 관한 사항
- \$e 원본과 연관성을 지닌 자료 참고정보

535 원본/복제본 소장처 주기 데이터필드의 적용범위를 원본이나 복제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

관명으로 확장하였다. 현재 KORMARC 필드에서는 타기관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본과 사본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보존을 목적으로 사본을 열람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사본의 존재와 소장처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식별기호를 재구성하였다.

#### 4.2.7 535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35 원본/복제본 소장처 주기(Location of Originals/Duplicates Note) [반복, 재량]

기술대상 자료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기관명을 기술한다.

\$a 소장처

\$b 관리번호

\$c 이용가능한 기타형태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 데이터필드에서는 기록물의 복제에 저작권의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필드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소들을 기술하기 위해 식별기호를 추가하였다.

#### 4.2.8 540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 [반복, 재량]

자료에 접근한 후 그 자료를 이용하거나 복제하는데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제한의 범주에는 복제, 전시, 인용, 저작권, 매매(거래) 등의 제한이 포함된다.

\$a 복제제한조건

\$b 제한기간 및 해제일자

\$c 복제상태

541 직접적 출처주기 데이터필드에서는 해당 자료의 직접입수의 방법 가운데 출처 외의 수집 방법과 관련일자를 기술하기 위해 식별기호를 재구성하였다.

#### 4.2.9 541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41 직접적 출처주기(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e) [반복, 재량]

해당자료의 직접입수와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해당자료가 입수될 때까지의 내력에 관한 정보는 561에 기술한다.

\$a 직접적 출처

\$b 입수방법

\$c 입수일자

\$f 소유자

\$h 구입가격

\$n 규모

\$o 단위유형

544 연관자료 위치주기 데이터필드에서는 연관자료의 소장처 외에 기록물의 특성과 출처 및 다른 연계성에 의한 기록물 관계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식별기호를 재구성하였다.

#### 4.2.10 544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44 연관자료 위치주기(Location of Associated Materials Note) [반복, 재량]

연관자료를 다른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거나 일부가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등에 그 기술되는 자료와 관련 있는 자료의 표제,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 관계 등을 기술한다.

- \$a 소장처
- \$b 주소
- \$d 기록물의 특성
- \$e 연관자료 원전
- \$f 원전 이외의 관계성

545 전기적 또는 역사적 주기 데이터필드에서는 ISAAR(CPF)의 정보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요소와 우리나라 공문서 서식에서 도출한 기술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인과 단체의 경우로 나누어 식별기호를 추가하였다.

#### 4.2.11 545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45 전기적 또는 역사적 주기(Biographical or Historical Note) [반복, 재량]

생산자 관련 개인의 전기적 정보나 단체의 역사적 정보를 기술한다.

개인, 가문일 경우 ;

- \$a 개인명, 이전/이후 이름, 소속기관, 관련 인명, 출생/사망일자
- \$b 개인이력주기, 활동지역범위, 가족사항, 주요활동 및 업적
- \$c 작성주기, 작성일자, 작성자, 최종수정일
- \$d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단체일 경우 ;

- \$a 단체명, 이전/이후 단체명, 이형단체명, 상위/하위조직, 관련조직, 설립일자, 해체일자
- \$b 행정연혁주기, 지역범위, 내부조직구조, 주요활동영역
- \$c 작성주기, 작성일자, 작성자, 최종수정일
- \$d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555 누적색인/검색보조도구주기 데이터필드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통제정보와 정보검색을 위해 작성된 검색보조도구를 기술하기 위해 MARC AMC 555 필드를 추가하였다.

#### 4.2.12 555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55 누적색인/검색보조도구주기(Cumulative index/Finding aids note) [반복, 재량]

해당자료에 대한 행정적·지적통제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통제범위를 지시하는 정보를 기술한다.

- \$a 누적색인/검색도구주기
- \$b 입수정보원
- \$c 제어정도
- \$d 서지참조

581 출판주기 데이터필드는 현재 KORMARC에서 참조정보원 추가로 명칭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출판주기를 기술할 수 있도록 출판주기 필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재정의하였다.

#### 4.2.13 581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81 출판주기(Publication Note) [반복, 재량]

해당자료를 이용, 분석, 연구한 출판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 \$a 출판주기

583 작업현황주기 데이터필드는 평가, 폐기, 처리일정, 보존과 같은 기술요소를 기술하기 위해 MARC AMC의 583 필드를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를 기술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추가하였으며 아키비스트 주기를 기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식별기호를 추가하였다.

4.2.14 583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83 작업현황주기(Action Note) [반복, 재량]

상태점검, 보존을 위한 대기, 보존완성과 같은 보존행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필드는 다른 작업현황 예를 들어 기록물의 처리, 마이크로필름화, 사진복사, 처리일정,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반복될 수 있다.

- \$a 작업현황
- \$b 작업현황 식별
- \$c 행위일시
- \$d 행위간격
- \$e 행위가능성
- \$f 제한근거
- \$h 관할지역
- \$i 행위방법
- \$j 행위장소
- \$k 행위기관
- \$l 상태
- \$n 규모
- \$o 단위유형
- \$x 비공식주기(아키비스트 주기)
- \$p 보존기간
- \$q 보존등급
- \$r 보존가치

584 추가주기 데이터필드는 기록물의 추가이

관여부, 예상수량 및 범위를 기술하기 위해 MARC AMC의 해당필드를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술요소를 기술하기 위해 재구성하였다.

4.2.15 584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584 추가 주기(Accumulation Note) [반복, 재량]

해당자료의 추가이관여부, 예상수량 및 범위 등을 기술한다.

- \$a 추가유무 및 추가빈도
- \$b 예상수량 및 특성
- \$c 입수예정일

850 소장기관 데이터필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참조코드 요소에 해당되는 필드로서 하나의 기술단위를 특별하게 구분하여 이를 표현하는 기술과 연결시키기 위한 참조코드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식별기호를 재구성하였다.

4.2.16 850 데이터필드와 식별기호

850 소장기관(Holding Institution) [반복, 재량]

해당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부호를 기술한다.

- \$a 국가명코드
- \$b 보존소코드
- \$c 개별기관내 기록물 통제코드

5. 결론

기록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기록물 기술의 통일



성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술표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물 관련 기술규칙 및 요소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계에서도 기록물을 도서관 자료와 함께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기록물 관리를 위한 KORMARC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원의 출처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은 통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MARC를 이용함으로써 기록물 기술은 도서관자료의 기술과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기록물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제정된 각국의 기록물 데이터 기술요소와 데이터 구조요소를 비교분석하여 기록물 기술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MARC AMC와 단행본용·비도서용·고서용 KORMARC의 데이터필드를 비교분석하여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AD(G)2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ISAAR(CPF)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기술요소 26개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며 디지털자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준용할 수도 없다. 또한 국제표준은 영어권 국가를 위하여 제정되었기에 그대로 채택하였을 경우, 언어상의 문제와 각국의 고유한 기록관리 관행과 문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록물 기술표준 제정 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ISAD(G)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SAD(G)2는 기술단위의 성격이나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의 기술에 필요한 핵심수준의 기술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어 기록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각, 지도, 건축기록물 등 특수형태 기록물의 기술을 하나의 표준안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기술표준의 경우도 RAD와 MAD3만이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외에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기록물 기술영역과 요소가 상이하며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통합된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의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외에 보존영역과 물리적 기술영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ISAD(G)2는 26가지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각국의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하위기술요소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기술 하위요소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기록물의 특수성을 기술요소에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기술 요소 분석에 따른 기술요소 외에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분석을 통해 선정된 기록물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

및 등급, 공개일자, 공개범위,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기록물용 데이터필드를 설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선정한 기술요소와 MARC AMC, 기존 단행본용·비도서용·고서용 KORMARC의 데이터필드를 비교분석하였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 새롭게 설정한 KORMARC 데이터필드는 512 생산일자 관련주기와 555 검색보조도구주기, 583 작업현황 주기이다. 또한 245 표제저자사항, 300 물리적 기술, 306 재생/연주시간, 506 접근

제한주기, 534 원본주기, 535 원본/사본의 소장처주기,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 541 입수처주기, 544 동일자료의 위치주기, 545 행정연혁/개인이력주기, 581 출판주기, 850 소장처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기록물 기술요소와 MARC 메타데이터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데이터필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KORMARC 제정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편. 1993.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 단행본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1995.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비도서자료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고서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김영지. 2002.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 ISAD(G)2 데이터요소로 분석한 APPM2, RAD 1998-2000 통합개정판, MAD2의 기술규칙 비교』.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2001. 기록물정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와 구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4): 57-81.
- 남궁황. 1999.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업무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비블리아』, 10: 231-251.
- 서혜란. 2000.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기록학 연구』, 1: 7-22.
- 윤주범. 1999. 외국의 기록물 기술보존. 『기록보존』, 12: 189-208.
- 이소연. 2002. 『ISAD(G)2를 적용한 한국기록물 기술규칙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기록원 연구보고서 2.
- 한경신. 2003. 기록물 기술을 위한 MARC AMC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157-176.
- \_\_\_\_\_. 2004.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25-147.
- 현문수. 2002. 『음성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16609호).
- \_\_\_\_\_.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 78호).
- \_\_\_\_\_. 200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8392호).

- \_\_\_\_\_. 2002.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대통령령 제 17811호).
- 禁本祥子. 1997. “國際標準記錄史料記述(一般原則) : 適用の試み- 諸家文書の場合.” *史料館研究紀要*, 28: 229-259.
- 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1994. *A Manual for Small Archives*. [cited 2004, 12, 10] <<http://aabc.bc.ca/aabc/msa/default.htm>>
- Barry, Randall K. Development of the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DTD. [cited 2005.3.20] <<http://www.loc.gov/ead/eaddev.html>>
- Bureau of Canadian Archivists. 1996.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ttawa : Bureau of Canadian Archives.
- Canadian Committee on Archival Description.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cited 2004, 8, 10] <<http://www.cdncouncilarchives.ca/archdesrules.html>>
- Carini, Peter & Shepherd, Kelcy. 2004. “The MARC Standard and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Library Hi Tech*, 22(1):18-27.
- Ehrenberg, Ralph E. Aural and Graphic Archives and Manuscripts. 1984. In *A Modern Archives Reader :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Daniels, Maygene F. and Walch, Timothy. Washington D. C.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 in U. S.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Evans, Max J and Weber, Lisa B. 1985. *MARC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Wisconsin Madison.
- Gertz, Janet & Stout, Leon J. 1989. “The MARC Archival and Manuscripts Control(AMC) Format : A New Direction in Catalog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9(4): 5-25.
- Holmes, Oliver W. 1964. “Archival Arrangement- Five Different Operations at Five Different Levels.” *American Archivist*, 27(1): 21.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G)2 :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second edition*. Ottawa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ittee on Descriptive Standards.
- \_\_\_\_\_. 1986. *ISAAR(CPF) :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Ottawa : The Secretariat of the ICA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 Marion Matters. 1990. “Reconciling Sibling Rivalry in the AACR2 Family : The Potential for Agreement on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f All Types of Materials.” *American Archivists*, 53(4) :76-93.

-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진리탐구.
- Murtoomna, Eeva. Could This Be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 a Comparison of the Description and Access to the Object of Interest Between the Libraries and Archives. 『66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Jerusalem, Israel, 13-18 August. [cited 2005. 5. 15] <<http://www.ifla.org/IV/ifla66/papers/125-164e.htm>>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 [cited 2004.12.1].<<http://www.nara.org>>
- Pitti, Daniel V.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cited 2005/3/20] <<http://www.dlib.org/dlib/november99/11pitti.html>>
- Procter, Margaret and Cook, Michael. 2000. *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 3rd ed. Brookfield, Vt : Gower.
- Roe, Kathleen D. 1990. "The Automation Odyssey : Library and Archives System Design Considerations". In *Describing Archival Materials : The Use of the MARC AMC Format*. London : Haworth Press.
- Schellenberg, Theodore R. 1965. *The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ellenderg, Theodore R. 2002. 『현대기록학 개론』. 이원영 옮김. 진리탐구.
- Schwartz, Candy & Heron, Peter. 2002. 『기록관리론』. 강순애 외 2인 공역. 아세아문화사.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4.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 A Handbook*. compiled by Walch, victoria Irons. [cited 2004. 12. 10] <<http://www.archivists.org/catalog/stds99>>.
- \_\_\_\_\_. 1989.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2nd editon*. Chicago.
- \_\_\_\_\_. 2001. ISAD(G) : Thinking about How It works for Us. *The Newsletter of the Description Section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1. [cited 2004. 12. 10] <<http://www.library.yale.edu/~dsmit/saa/dnwin2001.htm>>